

손해보험 의무가입 전 외항선박으로 확대

관련법 제정 추진...2008년부터 무보험 외항선 국내항만 입출항 금지

200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항선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의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선박은 국내항 입출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유조선은 관련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선박은 이같은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무보험선박의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외항선박에도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가칭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정에 있어 선주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 입출항 외항화물선, 원양어선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해양오염 처리비용 회수 등 해양사고 처리를 원활히 할 계획이다.



- 95년 여수 인근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

※ 선주책임보험(P&I, Protection & Indemnity)보험

선주 자신이 보험자이자 피보험자 지위를 갖는 비영리 상호보험으로서 선박의 소유·운항에 따른 제3자 손해에 대한 선주의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임

